

항목: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발행: 번호: D-170
 제목: 공석 충원을 포함한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발 절차 페이지: 1 의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서는 본 규정서의 게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2010년 3월 24일자 교육감 규정서 D-170을 갱신 및 대체한다.

변경 사항:

- 다음과 같이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Citywide Council on English Language Learners: CCELL)에서 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여야 한다.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ELL에서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임기 동안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자격을 갖춘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로서의 자격이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페이지 1 섹션 I.A.1 참조)
- 이해의 충돌 관련 조항은 교육감 규정서 D-125에 따라 갱신 되었다. (페이지 1, 섹션 1.A.3.c. 참조)
- 후보자는 한 개 이상의 커뮤니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복수 지원은 허용되나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는 없다. 신청 접수시 복수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고자 지원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조건부 선출된 후보자는 조건부 선출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명시한 위원회에 배치된다. (페이지 2, 섹션 II.A 참조)
- 현재 후보자는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각 공립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녀가 교육받고 있는 각 학군을 대표할 것이 고려된다. 후보자가 대표하게 되는 각 학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자격박탈의 사유가 된다. (페이지 2, 섹션 II.B 참조)
-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권고 투표가 절차에서 삭제되었으며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에서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후보자 포럼 실시에 대한 절차가 갱신 되었다. (페이지 2, 섹션 IV 참조)
- 같은 학군에서 복수의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1개 이상의 의석이 충원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이미 선출되지 않고 CCELL에서 활동하는 대표가 없는 학군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페이지 3, 섹션 V.A.3.b 참조)
- 복수의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결선투표는 별도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며 규정서의 요건에 따라 후보자가 분류된다. (페이지 3, 섹션 V.A.3.d 참조)
- 공익 대변인(Public Advocate) 임명 CCELL 위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공익 대변인 사무실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페이지 4, 섹션 V.B 참조)
- CCELL 공석 충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CCELL 또는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페이지 5, 섹션 IX.A.2 참조)
- “가정 참여 지원실(OFEA)”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부(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변경된다.